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41호의6서식] <신설 2024. 8. 28.>

반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명	[] 소유자 [] 관리자	생년월일
	주소		연락처
품명			수량
설치·방치한 장소 및 시기			
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57조의4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63조의5에 따라, 위 물건등이나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의 반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참고사항

1. 신청인은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, 영상,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
2. 담당 공무원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57조의4 전단에 따라 신청인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인수증

인수인	성명	[] 소유자 [] 관리자	생년월일
	주소		
품명		수량	
남은 금액			

위의 물건등 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인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인수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